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◇◇◇◇◇◇협의체 보조금 정산 소홀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○○○○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○○○○과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◇◇◇◇◇◇협의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같은 법률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, 조례,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○○○○과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◇◇◇◇◇◇◇협의체에 교부된 보조금을 정산하면서 통장입출급 내외 외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보완 조치 없이 정산 승인하였다.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○○○○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○○○○과장은

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